

## □ 개정내용

### < 1. 감면율 차등 적용 >

-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(수도권\*·비수도권 등)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하고, 담세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(대기업·중소기업 등)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\*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제외
  - (중소기업 감면) 수도권(45%)·비수도권(60%)으로 감면율 차등하여 적용
  - (대기업 감면) 감면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비수도권으로 축소하되, 취득세·재산세 감면율은 현행 유지(35%)
  - (그 밖의 기업 감면) 수도권(30%)·비수도권(45%)으로 감면율 차등하여 적용하고, 초기 중견기업은 감면세액이 소액인 점 등 고려하여 그 밖의 기업으로 일원화

### < 2. 추가감면대상 확대 >

- 국가·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도체·이차전지·백신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추가 감면 도입

#### <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교표 >

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정의	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 있는 기술 ('조세특례제한법' 제10조)	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('조세특례제한법' 제10조)
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[별표7]</li><li>①미래형자동차, ②지능정보, ③차세대소프트웨어 및 보안, ④콘텐츠, ⑤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, ⑥차세대 방송통신, ⑦바이오·헬스, ⑧에너지·환경, ⑨융복합소재, ⑩로봇, ⑪항공·우주, ⑫첨단소재·부품·장비, ⑬탄소중립, ⑭방위산업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[별표7의2]</li><li>①반도체, ②이차전지, ③백신, ④디스플레이, ⑤수소, ⑥미래형 이동수단, ⑦바이오·의약품, ⑧인공지능</li></ul>